



주목할 만한 내용:

1. 조세행정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징수 관리 강화

2. 법인소득세

- 무역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CIT 인센티브 적용 받을 수 없음
- 외주가공 의뢰 후 제품 완성 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3. 간접세

- 수출가공구역에서 수행하는 중개서비스에 대한 VAT세율
- 세금코드 폐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휴업기업의 계산서 발행
- 독립지점에서 모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및 세금 신고

4. 개인소득세

- 컴퓨터에 자체 인쇄한 PIT 원천징수 확인서의 사용 등록

5. 외국인계약자세

- 세금 등록한 외국인 공급자에 대한 FCWT 신고
- 장비 조달, 건설 및 설치로 인한 수익에 대한 FCWT

6. 무역 및 관세

- 수출가공업체에 대한 투자허가서 발급 시 관세감독 조건을 고려하지 않음
- 관세국은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서만 EPE를 감독함
- EPE로 부터 받은 가공품은 수입관세 및 VAT10% 가 부과됨.c
- 국내 시장으로 EPE의 자산 처분 및 매각
- 보세창고에서 수출생산을 위해 국내시장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VAT
- 일반 A4 용지에 원산지 증명서 인쇄



조세행정 & 법인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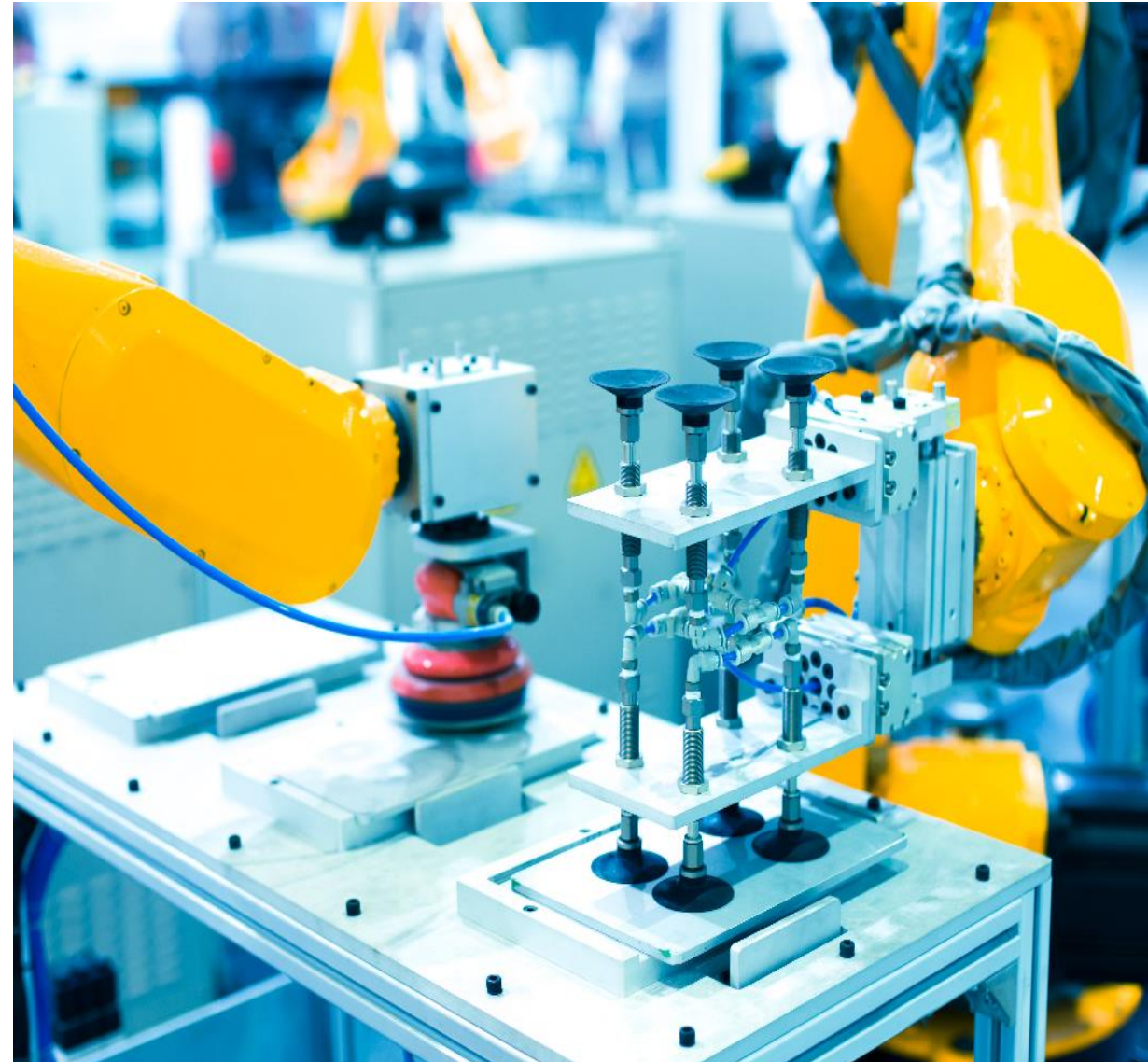
지침 문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징수 관리 강화

2022년 10월 1일에 국무총리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징수 관리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889/CD-TTg호 OL을 발표하였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세관리법에 따라 상업은행, 신용기관이 전자상거래활동을 영위하여 베트남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해외 기업들을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도록 국가은행이 지도하고 협조한다
- 법무부는 제126/2020/ND-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완하는 시행령 초안에 대해 긴급히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2022년 10월 19일에 공표된 제889/CD-TTg호 OL에 대한 세무 뉴르도 참조하십시오.
(국무총리의 2022년 10월 1일 제889/CD-TTg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무역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CIT 인센티브 적용 받을 수 없음

기업이 현재 CIT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와 상관 없이 무역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 증가를 위해 자본 증자 또는 투자확장이 없으면 무역활동으로 인해 얻은 수익은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세무총국의 2022년 8월 9일 제2910/TCT-CS호 OL)

외주가공 의뢰 후 제품 완성 활동으로 인한 소익은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고객이 요청한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다른 산업단지에 소재한 업체에 외주가공을 의뢰한다. 외주가공업체가 자재를 공급받아 일정한 공정을 수행하고 품질 검사를 한 후 제품 완성을 위해 가공된 자재를 회사로 다시 납품할 경우 이런 활동은 상업적 가공으로 간주된다.

제품을 외주가공 의뢰, 검사하므로 발생한 비용은 회사의 생산활동을 위한 비용이다. 따라서 회사의 가공 및 검사 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지역별 CIT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사는 규정에 따라 세제 혜택, 인센티브 세율 및 면세감면 기간을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Bac Giang 세무국의 2022년 10월 12일 제6089/CTBGI-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VAT”)

지침 문서

수출가공구역에서 수행하는 중개서비스에 대한 VAT세율

회사가 베트남에서 수출가공구역에 위치한 고객사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 서비스가 수출가공 구역 내에서 수행 및 소비되며 (수출 서비스)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계약 및 수출 서비스에 대한 은행 결제 증빙서류가 충분히 갖추어 진 경우 회사는 VAT 0%세율로 VAT 계산서를 발행한다.

회사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가 베트남에서 수행 및 소비되는 경우 회사는 VAT 10% 세율로 VAT 계산서를 발행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9월 23일 제46742/CTHN-TTHT호 OL)

세금코드 폐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휴업기업의 계산서 발행

회사의 계약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있지만 아직 세금코드 폐쇄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당국의 사업 중단 통보를 받은 날 전에 체결한 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고객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발생할 때마다 세무당국의 코드를 담은 전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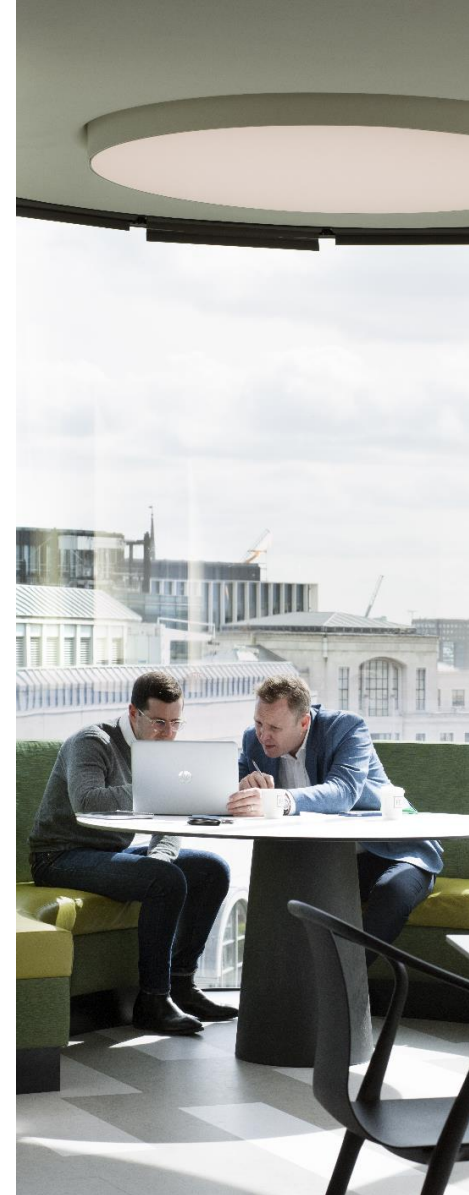
계약자는 제123/2020/ND-CP호 시행령에 첨부된 IA부록의 제06/DN-PSDT호 양식으로 세무당국의 코드를 담은 전자 계산서 발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9월 26일 제46904/CTHN-TTHT호 OL)

독립지점에서 모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및 세금 신고

회사의 독립지점이 자산 및 도구를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지점은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고 VAT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10월 4일 제3238/CTBNI-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컴퓨터에 자체 인쇄한 PIT 원천징수 확인서의 사용 등록

PIT 원천징수 전자 확인서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는 동안 단체는 (세무당국 포함) 자체 발행 형식으로 PIT 원천징수 확인서의 사용이 가능하다.

2022년 7월 1일부터 세무당국은 인쇄한 PIT 원천징수 확인서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단체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이미 구매된 세금 원천징수 확인서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 가능하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9월 13일 제 45085/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 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세금 등록한 외국인 공급자에 대한 FCWT 신고

외국인 계약자가 제 80/2021/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76 조, 제 77 조, 제 78 조, 제 79 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세금 등록, 신고 및 직접 납부를 하는 경우 이러한 외국인 계약자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조직은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9월 9일
제 44297/CTHN-TTHT 호 OL)

장비 조달, 건설 및 설치로 인한 수익에 대한 FCWT

외국인 하도급 계약자가 베트남에 외국인 계약자랑 장비 조달·건설·설치 용역 계약을 맺는 경우 외국인 하도급 계약자가 베트남에서 얻은 소득은 FCWT의 과세 대상이다.

외국인 하도급 계약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당국에 직접 세금등록 및 신고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계약자가 외국인 하도급 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 규정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 계약자는 외국인 하도급 계약자가 받은 총소득에 대하여 대신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10월 5일
제 3330/CTBNI-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출가공업체에 대한 투자허가서 발급 시 관세감독 조건을 고려하지 않음

투자허가당국은 투자허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2022년 3월 28일 제35/2022/ND-CP호 시행령에 따라 EPE (수출 가공 업체) 과 EPE의 지점 (있는 경우)이 관세 감독조건을 충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국과 상의하지 않을 것이다.

관세당국은 EPE가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관세 감독 조건을 충족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할 것이다. EPE에 적용되는 관세 감독 요건 및 세금 정책에 대한 검사, 확인, 완료의 업무는 정부의 2021년 3월 11일에 제18/2021/ND-CP호 시행령에 따라 수행된다.

EPE 또는 EPE의 지점(있는 경우)이 관세 감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관리 관세국은 투자허가당국에 업체의 허가서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관세총국의 2022년 9월 14일 제3804/TCHQ-GSQL호 OL)

관세국은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서만 EPE를 감독함

관세총국은 2022년 3월 02일 제247/QD-TCHQ호 결정서에 따라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EPE에 대한 관세 감독을 안내했다.

따라서, 관세국은:

- 카메라 이미지를 모니터링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의 징후를 발견하고; 및
- 의심스러운 활동의 징후가 확인되면 카메라 이미지를 통해 활동을 확인한다.

현지 관세국은 위험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EPE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다.

현지 관세국은 EPE의 외주 창고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여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EPE의 운영을 감독하는 계획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관세총국의 2022년 9월 20일 제3877/TCHQ-GSQL호 OL)

EPE로 부터 받은 가공품은 수입관세 및 VAT10% 가 부과됨.

국내 기업의 경우:

국내 기업이 EPE로 부터 의뢰한 가공품을 받으면 수입관세 및 VAT 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주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EPE의 경우:

국내업체에 제공한 EPE업체의 외주가공 활동이 베트남에서 무역 또는 무역과 관련된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우, EPE는 이 외주 가공활동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처리, VAT 10%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2년 9월 14일 제3805/TCHQ-TXNK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국내 시장으로 EPE의 자산 처분 및 매각

EPE가 자산을 국내로 처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자산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 국내에서 구입되어서 관세 신고가 면제된다; 또는
- 해외에서 수입되었으나 수입단계에 관세 의무 및 물품 관리에 대한 정책이 완료되었다

EPE 제도에 따른 관세혜택을 적용된 수입품의 처분 및 매각

수입품이 EPE 제도에 따라 관세 인센티브, 관리 정책을 받았으면 EPE는 처분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을 선택할 수 있다:

- 수입품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 관세 신고서를 제출한다; 또는
- 국내 구매자에게 상품을 처분할 때 국내 수출입 신고서를 제출한다.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입찰 패키지의 자산 처분, 매각

EPE는 계약자의 기술 설계 서류 및 기타 관련 문서에 기초하여 수입 관세 및 VAT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도료, 접착제, 테이프 등 시공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입세 및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

(관세총국의 2022년 9월 29일 제4067/TCHQ-TXNK 호 OL)

보세창고에서 수출생산을 위해 국내시장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VAT

관세총국은 보세창고와 국내시장 간에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VAT 처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보세창고와 국내 시장 간에 물품을 매매관계는 수출, 수입관계로 간주된다.
- 수출생산을 위해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 ✓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및
 - ✓ VAT 부과되지 않다

(관세총국의 제2022년 10월 6일 제4200/TCHQ-TXNK호 OL 및 제4199/TCHQ-TXNK호 OL)

신규 규정

일반 A4 용지에 원산지 증명서 인쇄

2022년 10월 15일부터 산업통상부의 전자 관리 시스템 (<https://ecosys.gov.vn>) 에서 원산지 증명서("C/O") 양식을 다운 받아서 ISO 표준에 따라 흰색 A4 용지에 인쇄될 수 있다.

온라인에 다운 받을 수 있는 C/O 양식은 D, AANZ, AK, AI, AJ, E, AHK, RCEP, CPTPP, VK, VJ, VC, VN-CU 및 S 양식이다.

이전에 산업통상부 ("MOIT")로 부터 구입한 C/O 양식은 2023년 4월 15일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다.

(산업통상부의 2022년 10월 10일 제257/TB-BCT호 통보)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